



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(다만,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)

**다. 부과금액 :** 위반사항 (1)항은 500만원(과태료), (2)항은 100만원(과태료), (3)항은 100만원(과태료) 부과

**라. 관계서류 :**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(참고 1)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명단(참고 2)

◀ **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·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 (법 제19조제4항)** ▶

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·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**가. 위반행위**

- (1)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
- (2)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

**나. 조치기준**

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

**다. 부과금액 :** 위반사항 (1)항은 300만원(과태료), (2)항은 10만원(과태료) 부과

**라. 관계서류 :**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·의결 또는 결정사항 조치 결과(참고 3)

산안위 심의·의결 또는 결정사항 조치 결과				
발의일자	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			
발의구분	(항거, 임시)			
구분	내용	이행내용	비고	
의 의				
의 결				
결 결				
의 이행사항				

◀ **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·게시 또는 비치·주지의무 불이행 (법 제20조제1항)** ▶

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,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1. 안전·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
- 2. 안전·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3.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

**가. 위반사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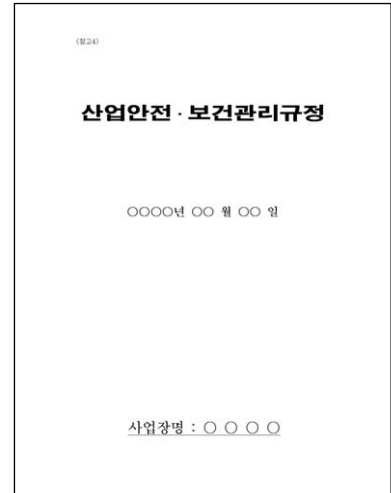
- (1)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
- (2)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

### 나. 조치기준

7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(단, 제 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)

다. **부과금액** : 위반사항 (1)항은 300만원(과태료), (2)항은 100만원(과태료) 부과

라. **관계서류** : 안전보건관리규정(주지 확인을 위한 서명 첨부)  
(참고 4)



### 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·변경절차 미준수 (법 제21조제1항) ▶

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### 가. 위반사항

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·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·의결(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)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

### 나. 조치기준

동 규정의 작성·변경절차를 주지시키고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조치 병행

다. **부과금액** : 200만원(과태료) 부과

라. **관계서류** :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(참고 1)

### ◀ 안전상의 조치 불이행(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) ▶

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기계·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
2. 폭발성,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
3. 전기,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

